

긴급진단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이대로 좋은가!

“수급조절기능 상실.. 유명무실 제도” 비난 높아

식품용 수입약재 반입량 기하급수적 증가 수급조절품목 국내 생산량 갈수록 감소

생산자보호와 국내 생약생산 기반 조성 차원에서 일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실효성 여부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제도 자체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존폐여부가 논란이 돼 왔던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그 존치 배경에는 국내생약생산기반 조성과 생산자 보호가 큰 봇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수급조절제도는 국내 생산자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몇몇 사람만 살찌우는 수급조절제도가 무슨 소용인가. 이럴바엔 차라리 다 풀리는게 낫다”고 말한다. 수급조절제도가 일부장사꾼들의 매점매석 여건만 조성해주고 쿼터풀을 들여오는 몇몇 수입업자를 만 재미를 보게 도와주는거 아니나는 것.

수입품 반입을 결사반대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차라리 폐지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그들 말속엔 현실에 대한 반감과 자포자기 심정이 숨어있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도운영의 폐해로 인해 수급조절기능이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고 그 어떤 특단의 조치 없이 지금 이대로는 생산농가의 현실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이다.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실제로 최근 3년간 식품원료로 반입된 수급조절품목 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세관 자료에 따르면 수급조절품목 중 식품용 반입량은 지난 98년 약 433톤에서 99년 5,241톤으로 경충 뛰는가 싶더니 지난해 2000년에는 무려 1만여 톤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국내 생산량은 갈수록 감소추세다. 농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 당시만 해도 33,084톤에 달하던 수급조절 품목 생산량이 98년 17,784톤으로 감소, 99년 15,455톤,

2000년엔 14,612톤으로 급감하고 있다.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물량부족으로 시세폭등 현상까지 빛기도 했던 국산 약재 시세가 최근 들어서는 값이 떨어지고 있다. 한약재로 수입이 금지돼 있는 품목이지만 식품원료로는 무한정 들어와 유통됨은 물론 생것으로 국내 반입돼 산지에서 가공, 국산과 혼용 유통됨으로서 국산 약재 판로를 막고 시세하락까지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식품원료로 반입된 수입 약재가 시중에서 한약재로 변칙유통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한 수급조절기능은 이미 상실했으며 어차피 식품원료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일부 특정인들의 이권보호기능에만 충실히 뿐 유명무실한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국내 생약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따라서 현실적 상황에 맞게 운영규정을 개정함으로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농림부 입현언 사무관은 “식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한약재로도 완전 개방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식품원료용 반입으로 인한 폐해는 불법유통약재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개방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아무런 자구책 없이 생산량이 거의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방할 경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국산 생산기반은 종자도 구하기 어려울 만큼 초토화됨은 물론이고 수입약재도 더 이상 지금처럼 값싸게 들여올 수만은 없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폐모. 폐모는 지난 97년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 지금은 종자 조차 구하기 어려울 만큼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같은 국내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들어 중국산 폐모시세가

폭등, 몇 년전 까지만 해도 미화로 kg당 2.5\$(한화 3천2백원 선)수준이던 중국산 폐모가 현재 산지에서 8.5\$(한화 1만1천원선)까지 거래되고 있다. 수급조절품목으로 묶여 있을 당시 국산 폐모 시세는 근당(6백 g 기준) 5천~6천원 선. 그러나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난 지금은 중국산도 근당 8천5백원 선을 호가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단체간 견해차이 커 세부운영규정 개정 유보

제도는 존치하되 생산자보호도 하고 수급조절기능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최근 논점화 되고 있는 것이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세부운영 규정이다. 그러나 관련단체들의 이권과 결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급조절위원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월5일 열린 제40차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세부운영규정 개정안을 놓고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유통일원화’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견해차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폐회되고 말았다.

앞서 열린 제39차 수급조절 위원회의에서는 관련단체에 쿼터풀을 일괄배정하고 각 단체별로 수입자를 선정해온 기존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수입자는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정기로 협의한바 있다. 이어 열린 40차 회의에 상정된 수급조절 위원회 세부운영 규정 개정 요청안의 주요 요지는 수입자 단체장(의약품수출입협회장) 책임하에 수입자를 선정→제조업자단체(제조대상품목), 한국한약도매협회(제조대상외 품목)에 배정→제조후 전량 한국한약도매협회에 배정→소비자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협회, 대한약사회, 한방병원협회 등)에 배정, 유통일원화 한다는 것.

그러나 김정렬(대한한의사협회) 위원은 “국산한약재도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유통일

원화에 동의한 것인데, 국산을 뺀 수입약재만을 유통일원화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며 난색. 강성국(전국약용작물협의회 조합장) 위원은 이에 대해 “국산한약재도 일괄 제조업소를 통해 유통돼야 한다면 현행 규제위가 정한 생산농민들의 자가규격품 취급 허용방침과 대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 따라서 “수급조절위 운영 세부규정안은 한약재 유통 관리규정안이 고시될 때까지 당분간 유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수입자선정이나 쿼터풀 배정방법 등 관련단체들의 기득권 및 이권과 결부된 수급조절운영규정은 쉽사리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한 채 차기 회의로 안건 유보된 것.

더구나 한약재 수급조절위 세부운영규정 개정안을 보면 단순히 수입자선정과 배정방법 등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을 뿐 국내 생약생산기반 조성과 장기적인 약용작물 수급 대책에 관한 언급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생약협회 남정학 전무는 “국산약재의 수매알선 등에 관한 내용은 규정안에 명기돼 있지 않아 아쉽다”고 말하고 “생산자 단체를 제외한 소비자단체에 쿼터풀을 일괄 배정 유통일원화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생산자 보호기금 조성 등 최소한의 국내 생약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소비자 단체에서는 “식품으로 들어와 수급조절 안될 바엔 차라리 \$당 30월이든 300원이던 일정량을 생산자보호기금으로 조성하는 조건하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량이 거의 없는 창출 등 품목의 경우, 연간 수입량을 정해놓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들여올 수 있는 상시 수입체제로 하자는 것.

계획생산부터 수매까지 체계적 수급조절기능 필요

모든 품목이 식품으로 이미 개방돼 있는 상황에서 수급조절품목의 쿼터량 결정과 개방 여부 논의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지도 모른다. 그 이전에 완전개방 속에서도 국내

생약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안이 지금부터라도 마련돼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국산 한약재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내는 것이고, 품질인증을 받은 국산 약재가 수입산과 섞이지 않고도 제값 받고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생산 한약재에 대한 정책적 수매제도 시행은 국내 생약생산 기반 조성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사항이다.

이같은 논리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최근 소비자들의 추세가 아무리 값이 비싸도 품질이 우수한 것은 꼭 국산을 찾는다는 점이다. 또 일본 등에서 국산 산수유나 시호를 중국산보다 10배 이상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수입해 가는 것은 그만큼 국산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은 “이제는 품질로 승부해야 하는 품질경쟁력 시대이며 국산 한약재의 품질 차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약재생산품질관리규정(GAP) 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다.

GAP란 화학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양약과 달리 한약재는 농민이 직접 재배하는 약용작물이므로 고품질 청정약초 생산을 위해 재배단계에서부터 최종 채취단계까지 전과정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약재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

농진청 작물시험장 성낙술 연구관은 “우리도 고품질 청정 약재 생산을 통한 국산한약재 차별화로 개방화시대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 비축해 놓다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재 만큼은 한의원이나 한약방 등에서 국산을 애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산한약재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과 국내 생산 약재에 대한 수매정책이 뒷받침 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같은 맥락에서 볼 때, 재배과정에서의 품질확보를 위한 연구부터 국산 약재의 생산량과 수요량 분석, 생산원가 산출을 근거로 수매도하고 수입량을 결정함으로서 생산자보호와 수급조절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한약재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유통관리까지를 체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새 그릇이 필요한 건 아닐까.

관련단체들의 이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행 수급조절 위원회로서는 국내 생산자 보호는 물론이고 반쪽뿐인 수급조절기능 수행도 이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정희>